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1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금년 6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며,
- 부칙 제2조에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u> <u>0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2</u> <u>2년 12월 31일</u> -----.